

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박진우* Jin-Woo Park
박명섭** Myong-Sop Pak
최두원*** Doo-Won Choi

목 차

- | | |
|-------------------|-------------|
| I. 서론 | IV. 협정별 비교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협정별 원산지규정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전문연구원,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공동저자

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FTA, 원산지규정, 수산물, 기국주의

I. 서론

글로벌 교역 환경은 GATT체제에서 WTO의 다자간 무역 환경을 거쳐 양자주의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으로 변화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체결 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15개 협정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 되어 있다. 최근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은 양자간 FTA에서 보다 확장하여 TPP와 같은 다자간 또는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는 발전된 형태의 RTA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및 활용도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FTA는 협정 당사국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을 확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FTA 체제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인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종의 기준 및 절차로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 부여를 위한 원산지 규정으로서 FTA에 따른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외산 상품의 우회·불법 특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FTA 원산지 규정은 일반기준, 품목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며, 개별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지기준과 같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해당한다. 개별기준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는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결합하거나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당사국의 다양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원산지 상품인정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로 향후 FTA 추진에 있어 품목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산지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미 FTA 및 TPP 등 가입을 앞두고 있는 RTA의 경우 농수축산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특정 품목에는 그 적용 RTA의 특별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양식과 어획에 의해 생산된다. 이 경우 공해에서 어획에 의해 획득된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특이점이 있다. 타 품목의 경우와 다르게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공해어업의 경우 공해에서 획득된 물품은 기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협정별로 그 규정을 상이하다.

FTA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어 오고 있으나,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된바 없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풍우·최준호(2007)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및 원산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정란(2008)은 FTA 원산지기준이 FTA 경제 효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영수·권순국(2012)이 2012년 진행한 직접운송원칙과 사례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들이 리스크(Risk)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상현(2013)은 2013년 한·EU FTA협정상 직접운송과 관련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조미진·이병문·송경은(2015)은 2015년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에 대해 분석 하였다. 국외의 연구로는 Estevadeordal(2000)의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연구는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 사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산물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FTA 체제에서의 수산물 교역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체결된 주요 협정들의 수산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물품의 국적에 있어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John J(2006)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FTA 체결국이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해외투자 및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Krishna, K(1995)는 원산지규정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며, 특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조달 및 생산 방식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비효율적인 역내산 중간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판정이 점점 난해해지고, 협정의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며, FTA 당사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규정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세형, 조국형(2012)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관세율과 양허유형에 비교적 유리하다라도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 경우 특혜대상품목이 축소되므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져 교역과 통상의 증진이라는 FTA 본래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 겪게 하고, Richard Baldwin(2006)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반면, 원산지 규정은 체결상대국의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체결국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유입 등의 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획득하여 합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즉, FTA 원산지 규정 ‘일반 기준’, 과 ‘품목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 기준은 총칙과 같은 의미로 주요 품목이나 특정 품목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은 각 품목별 혹은 특정 특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1> 원산지규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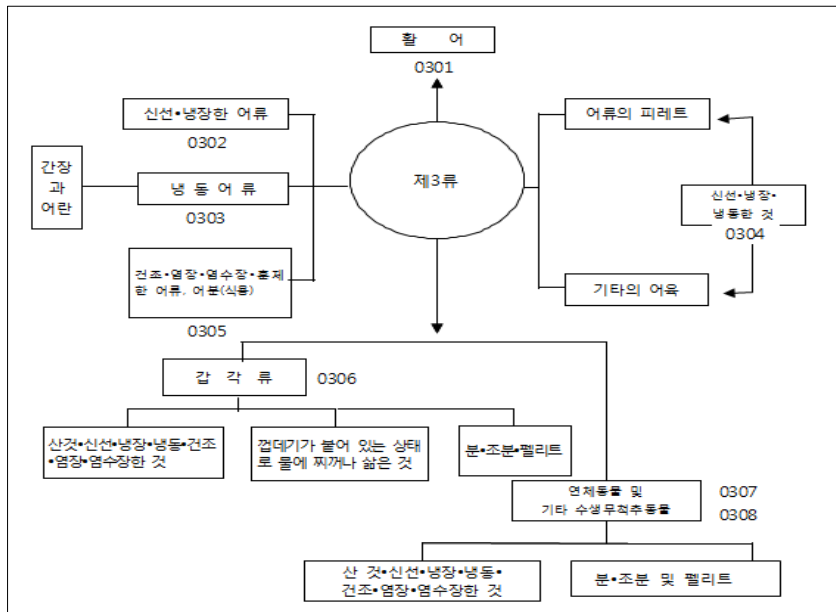
구 분	종 류	
일반 기준 (총칙)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세변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역내가공 + 충분가공 • 원산지재료 생산품 •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누적기준 <li style="width: 50%;">•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li style="width: 50%;">• 중간재 <li style="width: 50%;">• 대체가능물품 <li style="width: 50%;">• 간접재료 <li style="width: 50%;">• 부속품·예비품 <li style="width: 50%;">• 포장·용기 <li style="width: 50%;">• 세트물품 <li style="width: 50%;">• 재수입물품 <li style="width: 50%;">• 전사용품
품목별 기준 (각칙)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일반 주 <li style="width: 50%;">•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세 변변경기준 <li style="width: 50%;">• 가공공정기준 <li style="width: 50%;">• 부가가치기준 <li style="width: 50%;">• 조합기준 <li style="width: 50%;">• 선택기준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4, p.16.

2. 수산물의 품목분류

FTA에서 수산물이란 HS부호(세계관세기구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HS 제3류인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에는 생사여부를 불문하고 식용에 적합한 어류 등 이들의 분, 조분(粗粉), 펠리트로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훈제 등의 일시적 저장처리를 한 것과 조리하지 않은 것이 분류된다.(통조림, 부화용, 관상용 등의 것도 포함된다.)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5류로 분류하여 제외한다. 제3류의 분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그림 1> 수산물(제3류) 품목 분류 흐름도1)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1) 제3류의 분류에 제외되는 것으로는 ① 제0106호의 포유동물, ②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③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0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조분(粗粉) 또는 펠리트(제2301호), ④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이 있다.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수산물과 포유동물, 포유동물에서 나온 육 등이다.

3. 기국주의

기국주의는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國籍)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旗國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국주의는 법의 효력에 대한 속지주의(屬地主義)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면,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 시킬 권리를 가진다.²⁾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이어야 한다.³⁾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며, 두 국가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無國籍船)으로 취급될 수 있다.⁴⁾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하고,⁵⁾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 관할권은 그 선박의 기국이 가지며, 기국이 아닌 국가는 그 선박의 나포나 억류를 명령할 수 없다.⁶⁾

국제사범은 해상(海商)에 관한 법률행위(국제사범 제60조), 공해상의 선박충돌(61조), 공해상의 해양사고구조(62조) 등에 대하여 선적국법(船籍國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선적국은 일반적으로 기국과 일치하므로, 그 범위에서 기국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기국주의는 기국들로 하여금 공해나 제3국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일부 어선들의 엄격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기국의 관할권 강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FAO 총회는 ‘공해 상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이행중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0조.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2조.

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4조.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7조.

진을 위한 협정(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FAO 준수협정)'을 채택하였는데, 동 협정은 기국이 적용할 최소한의 등록조건과 공해어업에 대한 허가 조건을 담고 있으며, 주목 할만한 부분은 공해 상 어업선박에 의한 협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국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양수산부(2000) 따르면, 동 협정은 제3조에서 기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박만이 공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기국주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협정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도 국제적인 보존 및 관리조치를 침해한 선박에게 공해 어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박현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기국은 어업면허허가(漁業免許許可, fishing licence, authorization or permit) 발급 조건 관련 규제조치의 확립, 허가된 공해조업자국 어선의 기록(등록)부 유지, 자국 어선의 위치·조업활동 기록·보고, 국가 검색제도·국가 옵서버 프로그램·VMS 등을 통한 자국 어선의 감시·이행·감독, 공해상 전제 규제 그리고 소지역·지역 또는 전지구적 보존관리 조치의 준수 관련 규제조치를 확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협약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어선 소유자의 국제국인 당사국에 실효적 관할권 행사를 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선행연구

FTA 원산지규정 중 수산물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나 없다. FTA 원산지 규정 및 결정기준, 원산지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2010년 이후 이영수, 권순국(2011), 조미진, 김민성(2011), 장근호, 정재완(2012), 김희열, 박근재(2012), 김만길, 정재완(2013) 등은 원산지 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정재우(2011)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강준하(2008)는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연구에서 수산물에 대한 규정에서 영역의 범위와 연안국 주의 기국주의에 대해 언급 하였다. 김무한(2010)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활용에 대하여, 박현희(2012)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안용린(2007)은 EU가 채택한 FTA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여 한·EU FTA 협상에 필요

7)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기국주의는 오늘날 기국의 의무의 범위가 국제공동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관할권 행사의 의무까지 상당부분 부과되어 그 의미가 상당히 변모되었다.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재완(2008)은 원산지 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의 국내법과 FTA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상진(2009)은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확대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창환(2010)은 원산지규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스파게티 불 효과를 해결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연구로는 Kawai·Wignaraja(2009)의 원산지 규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수산물과 관련한 연구로는 정명생(2004)은 국내 수산물 소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요 어류에 대한 소비구조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대표 어류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선호를 분석하였다. 조용준(2007)은 WTO, FTA협상 등의 추진에 따른 수산업의 수입 확대로 국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산물의 대체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물 간, 그리고 수산물과 축산물 사이에 대체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을 평가할 때 동종 어종 간뿐만 아니라 수산물 간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해범(2012)은 수산물과 한·중 FTA를 주제로 연구 하였으며, 김은주·한낙현(2003)은 수산물 분야의 양허 내용에 따른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홍배(2006)는 한·중 FTA의 수산물 분야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표 2> FTA 선행연구

제 목	저자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김무한 (2010)
EU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안웅린 (2007)
우리나라의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박현희 (2012)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강준하 (2008)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정재우 (2011)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정재완 (2008)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이상진 (2009)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최창환 (2010)
수산물 수요 대체효과 분석	조용준 (2007)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명생 (2004)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고찰	최해범 (2012)
자유무역협정과 수산물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를 중심으로	최홍배 (2006)
한국·칠레 및 칠레·EU간 FTA 협정에 관한 비교연구 - 수산물 분야 양허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주·한낙현 (2003)

Ⅲ.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FTA에서 수산물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S부호 제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사여부를 불문하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 분류된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린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5류에 분류된다. 수산물은 ‘양식’과 ‘어획’에 의해 물품이 생산된다. 양식의 경우 치어 및 자어에 대한 완전생

산 인정여부, 어획은 영역의 안과 밖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영해내 어획과 영해 밖 어획 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선박이 체약당사국 선박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원산지 결정에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수산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주권 협정과 유럽권 협정을 비교 하였다. 미주권의 한·미 FTA와, 유럽권 FTA인 한·EU, 한·EFTA·한·터기 FTA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한-미 FTA

한·미 FTA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과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3류 품목 수는 HS2012 6단위 기준으로 189개 품목이다. 기초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체결 주요 협정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산물은 어획되기 전 살아 있는 상태의 어류가 제3류에 속하기 때문에 어획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완전생산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미에서는 189개 품목 모두 2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가공공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3류의 모든 품목에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⁸⁾는 공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이 일반적인 규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과 가공공정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선박에 의한 획득된 경우에 협정에서 규정하는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및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영역(영해)

8) 역외국에서 수입한 치어 또는 자어를 통해 양식으로 상품(성어)를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한다. 즉,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양식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밖 어획물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의 선박 요건은 첫째,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될 것’, 둘째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이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태로 어획한 물품에 대해 완전 생산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한-EU, 한-EFTA, 한-터키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럽권 FTA는 한-EU·한-EFTA·한-터키 FTA가 있다. 유럽권 협정 모두 HS 제03류에 분류되는 전 품목에 ‘완전생산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이 영해 밖에서 어획된 경우 한-EFTA FTA는 완전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박의 요건으로 ‘국기 게양’을 규정하고 있다. 한-터키 및 한-EU FTA는 ‘선박의 등록’, ‘국기 게양’, ‘선박 소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선박에 의해 어획되어야 완전생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터키 및 한-EU FTA는 양식된 수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한-EFTA FTA는 양식된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품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터키¹⁰⁾, 한-EU¹¹⁾ FTA는 HS 제03류에 대해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

-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도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 5) 체약상대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낚시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
-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물품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별표 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서 수행된 어로에 의해 획득된 물품이나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및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어획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해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을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가공하여 만든 물품의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¹²⁾ 선박의 당사국 선박으로의 인정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등록’,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 ‘체약당사국 국민이 선박 지분을 50/10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의 회사지분을 50/1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약당사국 선박(가공선박)으로 인정한다.

한-EFTA FTA는 HS 제03류에 대해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의해 획득된 물품이나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¹³⁾ 체약당사국의 선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를 충족하는 경우 체약당사국 선박으로 인정 한다.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낚시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12) 양식 어류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원산지 치어 등을 양식하여 성어가 된 어류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치어 자체가 역내산인 양식 어류는 원산지 상품임.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낚시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IV.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다수의 기체결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¹⁴⁾ 혹은 세번변경기준¹⁵⁾을 주로 인정하고 있다.¹⁶⁾ 완전생산의 경우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양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시 확인 하여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¹⁷⁾,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산물인 어류는 제3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생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물품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가공의 정도에 의한 품목 HS번호 변화로 동일 물품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공 농수축산물의 경우, 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를 고려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부가가치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 대상인 4개 협정인 한·미, 한·EU, 한·EFTA, 한·터키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한·미 FTA만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나머지 3개 협정은 완전생산기준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3개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이 아닌 기타 협정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칠레·페루·캐나다 등 미주권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아세안·인도 등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¹⁸⁾, 호주는 제3류 6단위 품목별로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산물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물품의 특성에 의해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2가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동일 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14)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15)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16) 기초 생산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 및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완전생산되어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발생.

17) 영역에 대한 적용 및 공해에서 어획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하는 등의 문제.

18)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에 의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 3> 주요 협정별 수산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적용 기준
한-터키	완전생산기준
한-EU	완전생산기준
한-EFTA	완전생산기준
한-미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양식 수산물

수산물은 크게 양식 또는 어획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생산된다. 양식을 통해 생산한 경우 한-미, 한-터키 및 한-EU FTA에서는 별도로 양식과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관련 규정이 없다. 양식 생산품의 한-터키 및 한-EU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산 치어를 양식하여 성장한 연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치어 자체가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역내산을 이용하여 양식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한-미의 경우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즉, 역외국에서 수입한 치어 또는 자어를 통해 양식으로 상품(성어)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양식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EFTA는 양식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거나,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규정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낚시양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양식을 위한 치어 자체도 역내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역외산을 이용한 양식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어획 수산물

어획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역과 선박의 국적 여부

가 주요 쟁점이다. 영해에서 어획한 경우에는 연안국 주의를 적용하지만, 공해상 어획일 경우 체약당사국 선박에 의한 어획된 것을 원산지 상품으로 하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터키 및 한-EU FTA의 경우 영해 밖에서 어획시 사용 선박이 ‘국기 게양’, ‘등록’, ‘소유’를 충족한 선박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며, 한-EFTA FTA에서는 ‘국기 게양’을 충족하는 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한·미는 ‘등록’, ‘국기 게양’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이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태로 어획한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요건이 중요 하다.

4. 선박 인정요건

쟁점은 협정별 선박의 인정요건이다. 비교된 4개 협정에서 한-터키 및 한-EU는 ‘국기 게양’, ‘등록’, ‘소유’를, 한-EFTA는 ‘국기게양’, 한·미는 ‘등록’, ‘국기게양’을 자국 선박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은 어선에 의해 공해 혹은 연안에서 어획된다. 국내법상 어선(fishing boat)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 등록을 한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 또한 동법 제6조에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²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하며²²⁾,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선박의 국적)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모

1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0) 어선법(漁船法) 제2조 정의.

21) 어선법(漁船法)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2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23)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원양어업자들의 준수사항.

든 국가는 자국국적을 부여할 조건을 정할 수 있고²⁴⁾, 동 협약 제92조(선박의 지위) 제1항에서 '선박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이나 기항 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⁵⁾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 FTA 협정에서의 '국기계양'의 의미는 체약당사국의 국적 선박을 의미 하는 것이다. 각국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정의 될 것이지만, 협약을 적용 받아 관리되며,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계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또한 두 국가 이상의 국기를 계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無國籍船)으로 취급될 수 있다.²⁶⁾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 협정 비교에서 나타난 한-EFTA의 '국기계양', 한·미의 '등록', '국기계양'시 자국 선박으로 인정하는 요건은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한-터키 및 한-EU는 '국기계양', '등록'에 '소유'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 협정에 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FTA체제 하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핵심은 '기국주의'라 할 수 있다.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하거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품목 특성상 완전 생산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해에서 어획된 물품의 경우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여부에 대한 기준이 기국주의이다. 각 협정에서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기국주의로 이는 일반적인 공해어업의 경우와도 동일하다. 하지만 협정에서는 이에 대한 표현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 계양'은 공해상에서 선박이 단순히 국가를 계양하여 어획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국기 계양'에 대한 해석 혹은 의미가 잘못 알려져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실무상 오해

2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

2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2조.

2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2조.

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개 협정 비교를 통해 원산지 규정 및 협정별 선박의 인정 요건에 대해 분석 하였다. 4개 협정에서 한-터키 및 한-EU는 ‘국기계양’, ‘등록’, ‘소유’를, 한-EFTA는 ‘국기계양’, 한-미는 ‘등록’, ‘국기계양’을 자국 선박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국기를 계양하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이어야 하기 때문에²⁷⁾, 특별히 국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정하고 있지 않는 한,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EFTA의 ‘국기계양’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한-미의 ‘등록’, ‘국기계양’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및 관세당국과 수출입 당사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이는 협정문상의 기국요건을 단순한 국기계양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협정문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발효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시 원산지를 오관하여 불법적인 특혜를 공여하거나, 수입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TA 특혜물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검증 과정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 자국 선박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원산지 물품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순한 협정간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식과 공해 어획 수산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FTA와 연계한 기국 및 국제 해양(수산)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국’, ‘기국관할권’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와 이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국제법’, ‘해양법협약’ 및 ‘공해어업협정’ 등 국제해양(수산)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수산기구의 협정 및 조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구 표면적의 약 70%인 바다를 삼면에 접하고 있는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FTA 활용·확장 과정에서 수산물 분야의 경쟁력을 선점 할 수 있는 방안 일 것이다.

2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

참고문헌

- 강준하(2008),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80호, pp.66-100.
- 김무한(2010),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주·한낙현(2003), “한국·칠레 및 칠레·EU간 FTA 협정에 관한 비교연구 - 수산물 분야 양허 내용을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제1호, pp.158-173.
- 김세형, 조국형(2012),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p.71.
- 남품우·최준호(2007),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2호, pp.183-203.
- 박현진(2007), “공해 어업·기국관할권의 제한과 전통 국제법에 대한 도전 : 한국원양어업 50주년과 유엔·WCPFC·SP RFMO 채택 결의·선언·조치 등 신공해어업 질서·관행의 도전과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27호, pp.119-150.
- 박현희(2012), “우리나라의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pp.447-470.
- 안용린(2007),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pp.75-96.
- 이상진 외(2009),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3호.
- 이영수·권순국(2012), “FTA 원산지 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pp.387-407.
- 조미진·이병문·송경은(2015),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7권, pp.163-186.
- 조용준(2007), “수산물 수요 대체 효과 분석”, 『수산경제연구원』 .
- 조정관(2008),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NAFTA 특혜관세 이용률 활용-”,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pp.133-154.
- 정명생·임경희(2004),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정재우(2011),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통상정보 연구」, 제13권 제3호, p.150.
- 정재완(2008),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 최창환(2010),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pp.509-535.
- 최홍배(2006), “자유무역협정과 수산물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제상학」, 제21권 제1호, pp.269-286.
- 최해범(2012),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27-148.
- 한상현(2013),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pp.207-232.
- 어선법(漁船法).
- 원양산업발전법.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stevadeordal, A.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34.
- John J. Barcelo III (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049, Cornell Law School, pp.2-3.
- Kawai, M. and G. Wignaraja(2009),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136.
- Krishna, K. and A. O. Krueger. (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Deardoff and Stern (ed.),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ichard Baldwin(2006), “Multilaterilising : Spaghtti Bowls as Building Bloe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12545”, *National Bureau of Economoc Reserch*, pp.22-3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Jin-Woo Park
Myong-Sop Pak
Doo-Won Choi

• Abstract •

In an FTA, rules of origin are decided by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directly involved and provided through a written agre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th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The PSR on fishery products by item are broadly divided into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wholly-obtained criterion and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Change of Chapter (CC). Fishery products belong to HS Code Chapter 3, which are generally produced through obtaining by raising or fishing. This study compared each agreement from this point of view. For the fishery products caught, an error in the job-related judgment may occur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s in charge do not have any background knowledge involved with high sea fisheries. Since ships may sail, hoisting the flag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involved with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ships for the judg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FTA, Fishery Products, PSR(Product Specific Rules),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